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5.18.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5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2년 5월 18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 6. 합정 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 행정동 (서교동, 합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내용

- (1)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합정동 416의1번지 외 154필지를 서교동에 편입함.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조례안은 현재 합정동을 법정동으로 하는 합정동 418- 1 필지 37,309.4㎡(11,286평) 일대를 2012년 6월에 합정 1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하나의 주상복합건물 내에 두 개의 법정동인 서교동과 합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 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사업 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정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서교동 387-1번지 외 94개 필지 15,591㎡와 합정동 418-1 일대 155개 필지 21,718.4㎡로 총 사업시행면적은 250필지에 37,309.4㎡로서 이중 합정동 418-1 일대 155개 필지 21,718.4㎡를 서교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이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합정동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